

第49回 (定期會)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9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12月27日(水) 午後2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96區有財產管理計劃(案)
3. 서울特別市城北區自願奉仕團設置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96區有財產管理計劃(案)(城北區廳長 提出) 4面
3. 서울特別市城北區自願奉仕團設置條例(案)(繼續)(城北區廳長 提出) 11面

(14時25分 開議)

○委員長 徐化錫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9회 정기회중 제9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 (案)(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徐化錫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재무국장 蔡昇基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鍊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동안 50%로 경감해주는 거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財務局長 蔡昇基 예.

○安傑瑤委員 安傑瑤委員입니다.

이게 재산세 감면조치가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한다 하는 얘기했는데 우리 성북구만은 시행 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蔡昇基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지가 좋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安傑瑤委員 본위원은 이런 감면세액이 너무 많다고, 경감조치하는 혜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 그전에는 공장부지같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얘기가 내용표현만 다름니다마는 72~3년도 전국적으로 서울인구 분산책이라 해가지고 공장부지 이런 건물들은 아주 중과세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속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고 중과세를 해온 그런 실정이었는데 정책이 그냥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제와서는 아파트형공장들의 세액을 50%씩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정책도 혼돈이 되고 형평이

없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줘야만 아파트형 공장이 입지 난이 해소되고 그분들의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이러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財務局長 蔡昇基 저희 구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형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하월곡동에.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전에 시청에서 그것을 담당해가지고 분석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수지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 설립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임대해줌으로서 고용도 많이 되고 또 주민들한테 염가로 물건도 팔 수 있고 주민들이 받는 이익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영이. 영세적인 공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성북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財務局長 蔡昇基 예, 시에서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金振權委員 그 외에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수 있는 추진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蔡昇基 저희구에는 입지가 좋지 않아서 검토하지 않았습디만,

○金振權委員 지금 월곡동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하나를 보고 이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蔡昇基 앞으로 들어올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俞鎮武委員 50/100이 아니라 제로포인트로 해주면 안돼요? 이왕 해주려면 과감하게 해줘야지 중소기업 경영은 너무 열악한데 지금 5년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왕에 하려면 파격적으로.

○委員長 徐化錫 그것은 형평에 안맞지, 액수를 많게 내고 적게 내는 것은 돈은 다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어렵다 해서 그것은 타당성이 없죠. 예, 金壽榮委員님.

○金壽榮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金壽榮委員입니다.

지금 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온대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인, 업자가 자기 건물이나 자기 땅을 가지고서 할때 상황 하나하고, 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임대를 하는 사람으로서 해주는 것, 두가지로 분석이 되죠, 국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셨는지, 제가 중소기업인데 점포나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점포나 땅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땅 부동산을 보유한 주인은 세 감면을 받고, 거기 임대해서 들어가는 저한테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비싸게 받는 다든지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장치는 생각해보셨는지.

○財務局長 蔡昇基 임대료 산출 제한이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에 현재까지 잘 안들어와요, 입주 안해요, 임대의 경우. 그래서 송파 경우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있을때만 해도 비었어요. 아파트형 공장 지어놓고 입주가 안되니까.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내린적이 있습니다.

○金壽榮委員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문제는, 지금은 당장 그런데, 앞으로 어느 시기쯤 흘러가면서 이런 세 감면혜택이 있으니까 활성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건물이나 땅을 가진 임자는 세 감면을 받고 입주해 들어가는 진짜 중소기업을 하는 업자들은, 지금 우리 전세같은 거 얻는 것도 사실은 세법 통해서 임대를 하는 것 아니고 주인들이 한 1년이고 2년 지나서 전세값 올라라 그러면 또 팍 올리고 어떻게 세금을 추정 못하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현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장치를 한번 검토 안해보셨나 하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법에 있습니다. 임대료 산출기준에 나와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합니다. 거의 일반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安傑瑢委員 국장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 입주난을 해소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세 감면한다 하

는 여기에 솔직한 말로 우리 성북구 재정자립도 형편으로 봐가지고 이 공장부지 한 건만 감면조례 있는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감면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북구 실정으로 봐서, 감면조례가 많은데 감면 혜택을 주고있는 조례에 의해서 혜택주고있는 것이 많을진대 이렇게까지 계속 조례에 의한 상위법이라고 해서 위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실지 매사는 형평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떠한 특정인이나 특정업체, 중소기업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좋지마는 우리 성북구 재정자립도로 봐가지고 해야 할 형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아파트형 공장부지 구세감면 한가지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성북구의 조례로 봐서 감면해주는 예가 많을진대 현재 전체적으로 본위원회 구정질문때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봐서 성북구 재정자립도의 형평에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어떠한 손익계산을 범하고 있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조례에 입안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蔡昇基** 성북구의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할만한 토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특히 이것은 중소기업도 아닌 영세공장이 입주할 거니까 이런 것을 하나 우리 구에도 마련함으로써, 법규를 마련함으로써 많이 공장이 자립할 수 있어서 구재정 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고요, 우리 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安傑瑤委員** 공장이 들어와서 이익은 좀 근로가 늘어나서,

○**財務局長 蔡昇基** 우리 구민들을 채용하는 거니까요.

○**安傑瑤委員** 세원도 늘어나서 좋겠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만큼 해로운 단점도 뒤따를 겁니다. 그러한 장단점의 모든 것을 분석 검토했을 때도 이런 것은, 나는 한가지만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우리가 종합검토 해봤을 때는 이런 것을 재고해야 할 염려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전에는 아파트형 공장부지라고 해서 중과세 물리고 매기다가 이제 와서는 이런 것 혜택을 준다는 얘기도 행정의 어떠한 신뢰성도 없고 이게 여러가지로 본위원은 불합리한 것 같아서,

○**財務局長 蔡昇基** 중과하는 경우는 공해공장이고요, 여기는 공해공장이 못들어오니까요. 영세공장으로서 단순히 가공업이니까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앞으로 중소기업 공장이 많이 육성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俞鎮武委員** 보통 얘기 나오는 것이 내부부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익을, 5년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적임되게 맞게하자 하는 얘기에요. 차라리 50% 해도 들어올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구, 50%라도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알면 차라리 형식으로 10/100이나 20/100해 놓고 장기적으로 최소한 10년 앞을 봐야지, 5년하고 나서 5년 또 할거예요? 최소한 장기적으로, 타지역보다는 성북구가 유익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야 중소기업을 싸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이 하지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여건이 다 똑같으면 그집 거나 이집 거나 똑같은데 불이익한 데 가서 누가 장사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가지고 내가 볼때는 차라리 지금 제가 요즘 신문을 봐도 금년에 부도난 데가 14,000군데예요. 사상 유래없이 이렇게 중소기업이 쓰러져가는데 내년에는 더 해요. 이것 뻔히 보는 것이고 시책 짜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줄 수는 없는 건지 묻고 싶어요.

○**財務局長 蔡昇基**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도 큰 기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한5년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경험이 있어야 분석이 되니까.

○**委員長 徐化錫** 예, 尹弘老委員長님.

○**尹弘老委員** 尹弘老委員입니다. 지금 공장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진보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

다. 다만 그동안의 행정추진방향을 보면 모든 공장은 중공업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업단지 등으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주거지역 내에서 영세사업자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문을 닫거나 또 공장지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주거지역 내에 우리 성북에서 공장형 아파트를 짓는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업종별 공장은 무슨무슨 공장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또 우리 주거생활과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저기 주택가에 산재한 가내공업 등이 이런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집단화합으로 오히려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지금 尹弘老委員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단순한 가내공업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법을 안가져왔는데요, 법에 대상이 다 열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해공장은 절대 못들어 옵니다.

○尹弘老委員 그러니까 지금현재 주거지역내에서 공장이 하나도 업종별에 따라서 공장등록이 안되고 이런 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장들이 여기에 서면 안되겠네요.

○財務局長 蔡昇基 예. 등록이 되고 주로 가내공업, 소규모공장

○朴時俊委員 주요골자를 보게되면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2항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해당이 되고, 지금현재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한군데 있습니다. 하월곡동에.

○朴時俊委員 석관2동에 예를 들어서 석관시장 거기도 아파트란 말이에요. 거기서 가내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하월곡동 하나 있구요. 관에서 시범으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구요, 민간으로 하는

것도 있겠죠.

○朴時俊委員 민간이 하는 것은 해당 안되고요?

○財務局長 蔡昇基 예. 이것이 민간이 하는 것으로 장려하는 것이거든요.

○朴時俊委員 그러니까 석관2동 큰 길 옆에 있는 석관시장이 있어요. 5층이거든요, 사람이 살고 또 옆에 다 공장이에요.

그것은 해당이 안되느냐고요? 아파트형인데요. 아파트로 되어있는 거예요.

○財務局長 蔡昇基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이 등록된 것이 그 외는 없는 것으로 아니까, 그것은 아마 비공식으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월곡동에 있는 하나만 정식 아파트형공장이고.

○委員長 徐化錫 전에서부터 하던 것은, 朴時俊委員님 전에서부터 하던 사람은 해당이 안돼요. 앞으로 할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여기보니까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96區有財産管理計劃(案) (城北區廳長 提出)

(14時46分)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96구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재무국장 蔡昇基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재산현황세부자료 및 보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설명을 드릴까요?

○委員長 徐化錫 예. 설명을 해주세요.

○財務課長 李海雄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재산매각을 위한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로해서 재무과장이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은 끝에 실음)

○俞鎮武委員 월곡동에만 땅을 매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財務局長 蔡昇基 지금 말씀한대로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주로 동청사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俞鎮武委員 월곡동쪽이 한쪽으로 쳐진쪽 아니예요?

○財務局長 蔡昇基 거기가 교통이 용이하고요, 앞으로 저희 생각은 점차로 동사무소를.

○俞鎮武委員 좀 생각을 해줘야할게 지난번에 보건소도 계속 말이 오르내리는게 한 모퉁이에다 지어놓고 보건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유용하나 해로우나 그것도 논란인데, 여기도 저쪽 귀퉁이에다 신설해놓으면 그쪽 동대문 사람들 좋으라는 얘기에요?

○財務局長 蔡昇基 거기는 거기 동사무소 들어갈거니까요.

○崔桂洛委員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 있죠? 중앙선으로 그려놓은거요. 뭘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海雄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동안에 재산을 매각한 것과 매입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는 현재까지 재산매각 대 매입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억의 재산을 국유지나 구유지를 매각을 했다면 매입하는 것은 한 15억정도, 그러니까 15.7%밖에 재산을 확보를 못했습

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재산을 매각위주로 재산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리다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년도에 각종 행정 목적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을 할만한 땅을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재산관리를 매각위주에서 불필요한 재산은 소필지에 점유되어있는 재산들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라는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이러한 현안은 얼마 안가서 보유재산이 없는 그러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산이 필요할때 땅이 없어가지고 무슨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재산은 적극 매입하는 그러한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우리가 세입 예산이 930억 중에서 지방세가 한 200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세외수입은 예산편성상 조정교부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기타 세외수입이 전부다 크게 나뉘어서 세외수입에 해당되지마는 순수한 우리구의 세외수입이 225억입니다. 그러면 지방세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22%인데 세외수입은 24%에 해당된다 그런 분석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에서도 220억을 분포를 보니까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중에 약 50억으로써 2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수분야에서도 여태까지 매각을 위해서 세외수입 확보하는데 치중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말에 매입지 줄은 가격을 비교한 사항인데 현지조사를 저희가 그 지역의 인근 공인중개사, 복덕방 등 세군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월곡동 현재 그자리, 그자리는 철도옆의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재 가격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 그옆에 있는 짜투리땅 상월곡동 53번지 6호는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58만원으로 돼있는데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에 거래가 되고있다고 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새로 도로가 개설된 사회복지시설과 동청사가 들어갈 장소, 거기도 24번지 52호는 나대지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안된 사항이고 그 인근토지 24번지 331호는 금년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3만원으로 돼있는데 거래가격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시각적으로 구분이 용이하기 위해서 막대그림표로 표시했는데 빨간색깔이 매각한 것이고 녹색이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년 동안 비교해볼때 매각 위주에서 재산을 관리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는 파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의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되겠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俞鐵武委員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왜 상월곡동에다 이렇게 치중해가지고 매입하느냐, 다른 지역에도 행정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앞으로 재산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한 대금 가지고 청사기금관리조례가 설치돼가지고 매년 매각된 세입가지고 50%는 기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으로 들어가면 각종 공공시설을 한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이러한 재산확보를 기금으로써 관리하면서 재산을 앞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자금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올렸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宋鍊 서울특별시성북구96년구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俊委員님.

○朴時俊委員 朴時俊委員입니다. 나름대로의 계획도 아주 좋고 매입한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俞鐵武委員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매입할 대상지 사회복지시설 매입지, 이것은 현재 공터로 돼있는 거죠?

○財務課長 李海雄 예.

○朴時俊委員 이것은 지금 안사면 언젠가 뺏기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상월곡동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걱정되는 것이 현재 상월곡동 현청사 97-26호 철도부지 이것이 경사부지로 돼있어요. 이것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죠? 경사지인데.

○財務課長 李海雄 얼마 안들어가요.

○朴時俊委員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는데 경사가 저가지고 그 꼭대기에 보면 철조망이 쳐있어요.

○財務課長 李海雄 산하고 경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축대 쌓을 겁니다.

○朴時俊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철도부지 노란표시 앞으로, 우측으로 하안공간 그것은 왜 안사나,

○財務課長 李海雄 거기 동그라미 표시돼있는 바로 접해있는 데가 파출소입니다.

○朴時俊委員 그것 말고 여기 철도부지라고 노란부분 경사진 면적에 연결된 부분, 우측, 번지도 없고 아무것도 표시 안한데 있죠?

○財務課長 李海雄 노란삼각형, 이것은 현재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朴時俊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사지, 이왕 사는것.

○財務課長 李海雄 재산이 모자라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이 삼각형이 난 이쪽에도 전부다, 사실상 허락만 되면 거기까지 전부 사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재원사정이.

○朴時俊委員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새로 구입할 해당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94년 공사완료가 됐죠?

○財務課長 李海雄 예.

○朴時俊委員 완료가 됐는데 동청사가 새로 들어갈 부지, 이 근방에 이러한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토지의 지가가 상승한 단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수익자부담같은 것 물릴 용의가 없는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 동네가 아주 좋아집니다.

○財務課長 李海雄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시

설이 이 장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 이 청색부분까지 포장도로가 여기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지역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져가고 지가가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朴時俊委員 그렇게 판단하면 우리 구에서 이러한 공공시설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 근방의 지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내야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財務課長 李海雄 그것은 공시지가로 반영이 되어 되고, 개발부담금 관계는 지적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時俊委員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財務課長 李海雄 예.

○委員長 徐化錫 다음 金振權委員님.

○金振權委員 金振權입니다. 이 토지매입비에 공시지가와 실가와의 차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떤식으로 매입을 할 것이며 또 24번지 348호 맞은편은 지금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이에요? 지금 청색 도로가 생긴 맞은편.

○財務課長 李海雄 키스트입니다.

○金振權委員 그러면 담장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담장만 쳐다보겠네요?

○財務課長 李海雄 거기가 키스트인데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수목이 있어가지고 동산이에요.

○金振權委員 그리고 상월곡동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財務課長 李海雄 그것이 구 경계니까 구 경계 중에서 이만큼이니까 여기까지 다 상월곡동에 들어가는 거죠.

○金振權委員 상월곡동에 들어가는데 그 키스트 수목으로 짜져있는 그 외에 주택가로써 성북구에 소관할 수 있는 범위, 그걸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성북구하고 동대문구하고 잘못하면 경계도 될 수 있어요.

○財務課長 李海雄 거기가 도면상에 성북관내도인데요. 지금 거론되는 땅은 이땅입니다. 구경계는 이만큼이니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어요.

○金振權委員 구경계는 그만큼 돼있는데 거기가 수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주택지의 구

의 활용가치는 없는 거예요.

○財務課長 李海雄 그렇습니다.

○金振權委員 그런데 우리 성북구 주민으로 봤을때는 결국은 수목지까지 동대문구로 봐야 돼, 왜냐하면 땅은 우리 성북구 땅이겠지만 생활경제지는 아니라고. 그랬을때 여기다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을 졌을때 성북구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한쪽 변두리 그런 얘기도 나오겠죠.

○財務課長 李海雄 김위원님, 상월곡동 행정구역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상 도면으로 볼때는 그렇게 변두리로 볼 수는 없습니다.

○金振權委員 그런데 도면으로 봤을때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종암동에서 용문고등학교까지가 종암동하고 한군데 붙었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종암동에서 중학교 학생들을 배정할때 용문고등학교로 한거예요. 교통편도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키스트수목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성북구 주민으로 봤을때 생활여건이 그 자리도 변두리고,

○財務課長 李海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지역의 생활여건은 화랑로로 전부다 이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문동으로 는 안갑니다.

○金振權委員 월곡동 주민이 사용하시는 동청사 부지로서는 제일 중심지예요?

○財務課長 李海雄 중심지라고 볼 수는 없죠. 현재 위치하고 별차이가 없이 바로 동사무소 앞에는 전부 주택가입니다.

○金振權委員 지금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데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財務課長 李海雄 이 장소가 아주 주택가에 동사무소가 위치하니까 주민들로서는 오히려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동청사에 철도부지하고 도로부지, 사유지들을 매입을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매입하여 재산활용하는 방법은 별도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땅만 사면 이것을 사업부서 총무과에서 공용청사를 짓겠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하겠다하면 주관과에서 별도 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땅만 매입

하여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매입대상이 동청사하고 시설매입대상지하고 현청사 인접해 있는 여러가지 땅은 다 매입하는데, 토지매입이 아까 俞鎮武委員님이 말씀하신 상월곡동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각 구에서도 재산관리를 재무과 직원들이 땅사러 돌아다닙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 땅은 재산가치가 행정재산으로써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俞鎮武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安傑瑤委員님.

○安傑瑤委員 安傑瑤委員입니다. 먼저 재산현황 세부자료에 구의회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재산관리실태와 재산매입의 필요성 같은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입안하셔서 잘하셨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저는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구의회청사 부지에 임야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아까 공시지가도 전부 나와있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복덕방이나 여러가지 시세를, 땅을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기준으로 예산 책정을 하셨는지, 달리 저렴한 땅으로 실지 거래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매입하실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상월곡동 사무소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매입해놔서 효용가치가 다운(down)해서 지가해보면 만원, 이렇게 현실대로 보면 전부 이런 땅인데, 평당 좋은 땅은 200만원, 400만원 되는 실정속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 구유재산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매입을 해야지 어떤 토지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만, 감정가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감정을 하는 것도 이익을 위해서 감정을 해야지, 땅이 생긴다고 이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평당 금으로 해가지고 얼마다, 이런 것은 안돼요.

○委員長 徐化錫 됐습니다.

○安傑瑤委員 이런걸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월곡동 사회복지시설 노인정시설 동청사 이전 부지가 실제 재산 매입하는 것은 좋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매입하시되 동청사이전부지로 봐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정 동청사 이용으로 봐서는 장소가 부적합하다, 현재 상월곡동에 가면 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재개발사업부지에 거기에 아파트단지에서 동청사 같은 것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하시고 검토하셔서 이 동청사같은 것은 상월곡동 전 주민들이 한 복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청사를 만들어야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한 귀퉁이에다 아주 이렇게 해놓으면 이용가치가 적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니까 참고하셔서 장소는 매입을 하시되 나중에 시설하는 문제는 재고해야할 입장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격은 절대적으로 이런 가격형성이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이런 부지에 이런 가격 나가는 예가 없어요. 복덕방에서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저도 이런 부동산 시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런 땅 이런 위치 이런 생김새 모양에 이런 시세 나가는 것은 저는 절대 없으리라고 보고, 이건을 좀 달리 매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또 감정을 어떻게 하실건지요?

○財務局長 蔡昇基 安傑瑤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매입절차 매입단계에 들어가는데 매입할 때는 개인이 매입하는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매입하는 것 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현시가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 두군데를 거쳐가지고 그것도 또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됐는지 그것을 또 감정평가한 것을 또 걸립니다. 또 걸러가지고 가격결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국공유지를 매입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가격결정이 됐다 그러면 개인

은 10억 주고서 사야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살때는 10억으로 사되 2억은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80%에 산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가급적이면 땅이라는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신장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땅을 매입하는 추세라면 적극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金振權委員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00만원이고, 실거래가는 200만원쯤 된다면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벌어질 것 같으나 하면 그 주위에 그것을 실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배 차이가 나니까 그 주위의 토지등급을 올려놓고서 작업을 하는 그런 현상도 있지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그렇게하면 오히려 우리 구청의 손해인데요. 오히려 공시지가를 떨어뜨려가지고 매입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투자하고서 매입하기 위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이 위원들께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내년도에 매입결정이 됐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시지가를 다운(down)시켰으면 좋겠습니다.

○金振權委員 매입하는 측에서는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것을 원하겠지만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가액이 맞지 않는데 매매가 형성 안되니까, 매매가 만약에 형성되더라도 실거래가로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때 어떻게 매입을 하실거나 이거죠.

○財務局長 蔡昇基 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하고 현시가의 중간선이든가, 지금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70~80%가 공시지가로 거의 평균 내면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은 현시가의 80%~90% 선에서 감정평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결정할 때 그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공시지가는 얼

마고, 감정평가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현시가는 얼마고 이것을 전부 비교평가를 해가지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한 17명 되는데 거기서도 이것이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평가해왔더라도 공유재산 심의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이것은 너무 싸게 됐다, 그래서 10%를 올린 다든가 그래서 가격결정을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안하시도록 적절히 매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땅을 매입하더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최대한도로 해야됩니다.

○財務局長 蔡昇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尹弘老委員님.

○尹弘老委員 尹弘老委員입니다. 지금 상월곡동 63-319임야로 길게 늘어진 대지는 이것은 현황도로인지 도면상으로 보면 현황도로같은데 94년 공사완료 구간으로 파란 색깔만 칠한 부분만 도로로 말씀이 있으셨고 24-52 전 토지 앞면 적색 표시부분은 도로로 6m 개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간에 지금 말씀드린 24-319와 24-52 사이에 들어있는 토지는 번지도 지적상에 없고 그런데 24-319 연장 토지를 잘라낸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지금 6m 도로 예정구간으로 되어있는 14m 연장 도로로는 동청사를 지을 경우에 너무 협소하다는 판단이 되어있고, 또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의 도로계획을 이렇게 해서는 차량출입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각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214-318과 214-52 토지간에는 도로를 완전히 가각정리를 해서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내고자 하는 도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었지만, 현 동청사 크기와 새로 동청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주민들의 이용편의에서 보면 현재 청사부지가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하월곡 2동같은 경우는 동청사를 관상가로 계획하고 있으면서 토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동청사를 짓고 집기시설 등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지역으로 동청사 부

지를 별도 매입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를 매입해서 확보하는 것은 좋은 행정방침이라면 토지를 매입해서 사회복지시설등 목적으로 쓰고, 구태여 동청사를 이전을 한다는 전제조건이 아닌 방안으로 매입을 하고 동청사는 현재 위치에 신축을 해서 복합건물을 짓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海雄 尹弘老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색 부분의 도로는 계획도로입니다. 여기 흑색으로 표시한 것은 아마 앞으로 이 도로도 개설이 되어서 저쪽의 이문로하고도 연결이 되는 도로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4-52호의 도로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항은 이 도로도 전부 다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장소 앞으로 계획한 이 도로, 이 도로는 교회건물로 되어있습니다. 교회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위치가 기존에 있는 이 동사무소 자리하고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이 장소의 동사무소 위치가 전체적으로 볼때 위치가 부적절하다 판단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우선 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기존 동사무소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이 장소가 사회복지시설로만 활용할 할 것인가 기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상월곡동이 지역이 내년도에 대단위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자리를 재개발 사업 지구내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땅만 매입하고 이것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安傑瑤委員 덧붙여서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운산 의회 매입 부지는 임야로 되어있고 대지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공원용지 시설 부지로 현재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임야가 한 210만원 꼴 되고 대지가 한 260만원 꼴이라면 평야의 주택지도 땅 못생긴 것은 전부 현재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다는 얘기고,

○財務課長 李海雄 安傑瑤委員님 말씀하신 그 개운산 구의회 부지있죠, 그것 가급적이면 지적과에 얘기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공시지가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安傑瑤委員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하셔야죠.

○財務課長 李海雄 검토해가지고 싸게 매입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安傑瑤委員 사회복지시설 동청사 상월곡동 시설하겠다는 부지도 평당 개념입니다만, 따져보니까 지금 가격이 한 400만원꼴 돼요. 현재 장위동 같은 1급지 동네에도 A급 1급지라는 주택지가 400만원, 45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이런 부지의 이런 시세는 예가 없어요.

○財務課長 李海雄 현시가는 우리가 땅 매입하는 데 절대 도움이 안되는 겁니다.

○安傑瑤委員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매입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財務課長 李海雄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토론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96구 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과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다루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31分 停會)
(15時52分 續開)

3. 서울特別市城北區自願奉仕團設置條例(案)
(繼續)(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徐化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자원봉사단설치조례안심사의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동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단 설치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대비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振權委員 위원장, 질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답변합니까?

○委員長 徐化錫 제가 아는데로 답변하겠습니다.

○金振權委員 그러면 내용을 한번 꼭 낭독해야죠.

○高允根委員 위원장님, 어제 말이죠 다시 재문하였는데 어제 의사록을 보면 알지마는 질문은 없기로 하고 찬성토론 해서 가결만 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자도 없는데 위원장이 답변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습니까?

○委員長 徐化錫 혹시라도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어제 조직이,

○金振權委員 위원장님, 이게 회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면 질의하고 토론하는 절차가 있는 건데 질의를 했을 경우에 여기 앉은 각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답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委員長 徐化錫 어제 다섯사람한테 위임했죠, 소위원회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金壽榮委員 어제 장시간의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이 5인 약식 소위원회

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조정된 사항들을 오늘 가결통과시키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申宗鉉委員 삼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의 지극히 너무 소극적이에요.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못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상입니다.

○金振權委員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안의 자구수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 徐化錫 어제 자구수정 또 삽입할 사항, 삭제할 사항을 다 검토할 사항을 우리 5인 소위원회에서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金振權委員 그러면 제가 여기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기능에 보면 3조 3항 불우이웃돕기와 청소년 선도 이렇게 해놨어요. 이 문제가 자구수정해야 되는 이유를 저 혼자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선도 이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성북구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조직이 돼있고 각 동별 30개 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라는게 엄연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해야지만, 삭제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徐化錫 아니죠.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있어서 꼭 어떤 법적으로 돼있는 사항을 가지고 법적으로 조직된 단체만이 청소년을 선도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때 자원봉사단이 그것을 보고 그냥 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도는 어느때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청소년 선도위원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어떤 조직체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봉사단으로써 언제 어느때라도 봉사활동을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하는 이 있음)

예, 俞鎮武委員님.

○俞鎮武委員 삼청까지 나와있고, 지금 회의

가 진행중이니까 속행합시다.

○委員長 徐化錫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8조 1항에 다, 국토대청결운동, 셋강살리기운동 참여, 질서확립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환경파괴 및 오염행위 감시'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고 토론도 이미 나왔고 삼청까지 다 나와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원봉사단 설치조례안은 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0分 散會)

○出席委員 12人

徐 化 錫	崔 東 煥	高 允 根
金 壽 榮	金 振 權	朴 時 俊
申 宗 鉉	安 傑 瑢	俞 鎮 武
尹 晚 丸	尹 弘 老	崔 桂 洛

○缺席委員 1人

宋 夏 星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宋 鍊
---------	-----

○參席公務員

財 務 局 長	蔡 昇 基
財 務 課 長	李 海 雄